

【 12 】 검토보고서 (목차 5항 - 8항)

5. 양주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6. 양주군회천읍덕계출장소설치조례안
7. 양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
8.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정된 본 조례안은 실무담당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군의 상수도 용수 수요량이 급증함에 따라 회천 상수도  
보조수원공 개발 및 광역 상수도 5단계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수도 시설의 관리 및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권역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에 기구승인 요청을 하여  
'96년 1월 19일 승인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 제1조 및 제2조에서 사업소의 명칭은 「양주군상수도사업소」로  
하고 사업소의 소재지는 회천읍 회정리에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 제3조에서 사업소의 관장업무는 양주군의 상수도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분장하고
- 제4조 및 제5조에서 사업소장은 6급 행정 또는 토목직으로  
보하고 사업소장 이외의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안으로

□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 회천읍 덕계 출장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정된 본 조례안은 담당실무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우리군의 회천읍 인구가 "95년 12월 31일을 기준할 때 총 33,079명으로 이중 덕계리와 회정리의 인구가 51%인 17,111명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덕계 현장 중계민원실로는 민원 및 행정수요를 충족 시키지 못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 기구승인 요청을 하여 '96년 1월 19일 승인된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 제1조 및 제2조에서 출장소의 명칭은 양주군회천읍 덕계 출장소라 칭하고 관할구역은 덕계리 및 회정리 전 지역으로 하였으며
  - 제3조에서 출장소의 업무를 읍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중에서 분장기로 하였으며
  - 제4조 및 제5조에서 출장소장은 6급 행정직으로 보하고 출장소장 이외의 공무원을 두고자 하는 안으로
-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증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정된 본 조례 개정안은 방금 검토보고 드린 양주군 상수도사업소 설치 및 양주군 회천읍 덕계출장소 설치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96. 1. 1일자로 양곡관리 특별회계의 정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경기도에서 승인되어 양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공무원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에 근거하여 조례안 제2조 제1호에서 군 본청의 정원을 266명에서 양곡관리 국가직 공무원 3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269명으로 조정되는 내용과
  - 사업소의 정원은 19명에서 상수도 사업소의 신설로 회천읍·남면·백석면에 소속되어 있던 상수도 관리직원 8명과 기구승인에 따른 증가인원 7명 총15명이 증원되는 내용이며
  - 읍면의 정원은 덕계출장소 신설로 7명이 증증원되고 양주군 상수도 사업소 신설에 따라 8명이 감소하여 정원이 183명에서 182명으로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상정된 본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실무담당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공무원에게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를 실시하는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의 복무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이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 14,825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를 근거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군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7조에 2항을 신설하였으며
  - 제18조에서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 기간별 휴가일수를 현행 20일에서 23일까지로 조정하고
  - 공무원이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는 공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제22조에 5항과 6항을 신설 하였으며

-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 이내의 특별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제23조에 제5항을 신설하고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제23조에 6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규에 위배되거나 주민의 행위제한, 자구, 체제 등에 문제점이 없는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